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재경부, 산자부외 4개부처

지난 11. 13일 정부는 고유가 시대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I. 국제유가 전망

1.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불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 지속

2. 유가상승이 산유국 생산능력 제약, 선진국·신흥개도국 수요증가 등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하므로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 → WTI 기준 85불 수준, Dubai 기준 80불 수준 이상

○ (공급측면) 원유재고와 非OPEC 국가의 원유공급이 기대에 못미치는 가운데, 원유공급의 중심축이 다시 OPEC로 이동

* OECD 재고(백만b/d): (06.3/4)27.4 →(4/4)26.4→(07.1/4)26.0→(2/4)26.6→(3/4)26.7

* 非OPEC공급(백만b/d): (06.4/4)49.9 →(07.1/4)50.2→(2/4)49.9→(3/4)49.4

- 저생산비용 국가인 OPEC 산유국의 새로운 油井개발 투자효과가 현실화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Goldman Sachs, 5~10년)

* 2차 오일쇼크 이후 산유국 투자급증의 영향으로 80년대 후반이후 장기간 유가약세를 경험한 바 있어 최근 유가상승에도 산유국이 투자확대에 조심

국제유가 동향(현물, 불/b)

	2006	2007	07.9월	07.10월	10.15	10.31	11.2	11.9
Dubai	61.6	65.4	73.3	77.2	76.6	81.3	85.2	87.5
Brent	65.1	69.6	77.5	82.8	83.1	90	92.3	93.6
WTI	66	68.9	80	85.9	86.1	94.5	95.8	95.5

*史上 최고가 : (Dubai) 88.8(11.7일), (Brent) 94.9(11.7일), (WTI) 96.6(11.7일)

스러운 입장 견지

- (수요측면)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요가 둔화되지 않는 모습
 - 높은 성장세로 인해 중국 등 신흥개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중동 등 산유국의 국내 수요도 증가
 - 선진국의 경우 석유제품 정제마진 축소와 달러화 약세 및 자국통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요가 高유가에 둔감해진 상황

* Crack Spread(\$/Gallon):
(07.5월) 1.0 → (07.10월) 0.1~0.2

* 통 화 절 상 륜 (달 러 비 ,
05~07.10): (원화)11.6 (유로)21.9 (中 위안)8.0



- (지정학적 요인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증대, 원유선물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증가 등이 추가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

3.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유가의 일시적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100불대(Dubai 기준) 이상 초고유가의 장기화 현상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 우세

- (공급측면) 고유가로 인해 OPEC 및 非OPEC 공급이 증가하면서 08.2/4분기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
 - 특히 2007년 이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러시아 지역의 원유 생산능력 확대

(Kazak 및 Azeri 등 : 25만b/d)의 성과가 내년부터 현실화되고 브라질(33만b/d) 등의 추가 공급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유가가 100불대에 근접할 경우 대체연료(현재 세계 유류수요 3% 수준 충족) 개발·사용이 확산되면서 유가 하락에 기여할 전망

- (수요측면) 유가가 100불대를 지속할 경우 세계경기 둔화로 원유수요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

* 非OPEC 국가의 추가공급이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로 최근의 유가상승추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11.1 The Economist, 11.9 JP Morgan)

- (지정학적 요인) 지정학적 이유로 인한 유가급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

- 과거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가격급등 현상은 대체로 2~7개월 후 진정

*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고유가 지속기간(개월)
(1차 쇼크) 14, (2차 쇼크) 12, (걸프전) 7, (이라크전) 4, (이·레바논전, 06년) 2

II. 고유가시대의 세계적 대응추세

1. 선진국들은 고유가 지속에 대해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부담 완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음



주요 OECD 국가의 휘발유 세금 변화율(2004.12~2006.9)

	터키	그리스	이태리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상승률(%)	35.3	13.6	5.5	3.7	2.8	1.9	1.9	△57.4
상승률 순위	1	4	12	21	24	26	27	29

- OECD 국가 등에서도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최근 2년간 유류세 등 세금을 인하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
 - 산유국인 멕시코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해 석유관련 조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유류세를 인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

2. 오히려 선진국들은 석유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미국·EU 등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여 석유 의존도 감소,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수력·원자력 비중 확대 등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추진

· 일본「신국가에너지 전략(06.5월)」: 2030년까지 ①에너지절약 30% 추진, ②석유 의존도 45% → 40%로 축소, ③해외개발 석유 공급 15% → 40%로 확대 등

· 미국 「Twenty in Ten(07.1월)」: 2017년까지 ①휘발유 소비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②업평균연비를 강화하여 휘발유 연간 소비의 5% 절감 등

· EU 「에너지 가이드 라인(07.1월)」: 2020년까지 ①탄소 배출 감축목표 20%, ②신재생에너지 비율 6%→10%, ③수송 연료중 바이오연료 비율 10%로 제고 ④에너지 절약 20% 달성 등



3. 그간 가격통제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인상을 억제해왔던 중국도 최근에는 유가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 중국은 석유제품 가격통제를 통해 유가 상승분의 50% 수준만 제품가격에 반영해왔으나,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정유사가 공급을 줄임에 따라 11.1일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10% 내외 인상

-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가격인하 정책이 유류수요 가격탄력성을 약화시켜 에너지 소비증가를 유발하는데 기인

- 이는 유가 상승이 가계·기업 등 누군가는 부담해야 할 충격이므로 민간이 유가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토록 하여 고유가 부담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함을 시사

4. 일각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상 등을 통한 석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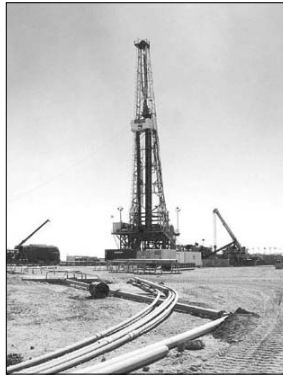
품 가격 인상을 주장

-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외국紙는 유가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오히려 유류세 인상을 통해 유가인상을 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

* Wall Street Journal (11.8): Oil's High Price Would Hurt Less If The Money Were Better Used

- 고유가 지속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유류세 인상의 현실성이 다소 의문시되고는 있으나 기본방향은 유류 소비 절감임을 강조

- 5.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 * 07년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기후변화가 지목되었으며, 그동안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 온난화 논의가 급속히 진전



III. 고유가시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

시사점 1

유류세 기조유지 등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 노력 등을 통해 고유가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 개선

- 1. 그간 경제규모 및 소득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혁신형 경제로 발전

되어 유가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원유집적도(oil intensity) · 원유의존도 등 에너지 관련지표가 제2차 오일쇼크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축소

* 원유집적도(원유소비량/실질GDP : 천톤/조원) : (1980) 174 → (2006)

139

원유의존도(전체 1차 에너지중 석유비중) : (1980) 61.1 → (2006) 43.8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 (1980) 0.316 → (2006) 0.306

3. 최근 고유가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의 결과 원유 · 석유제품 소비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

- 최근 원유수입 추이를 보면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다소 시차를 두고 수입물량도 감소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07.1/4분기	07.1/4분기	07.1/4분기
수입단가	Δ3.8	0.6	5.3
수입물량	2.0	0.7	Δ6.3

- 소득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휘발유 총사용량은 늘었으나 연비 개선 등으로 1대당 소비량은 감소

- 기업도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기업 에너지효율화 투자 추이(産銀, 억원): (04)3,950 → (05)3,894 → (06)4,113



3. 이와 함께 해외유전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확보노력도 강화

* 06.7월 석유공사에서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지분 100%를 인수, 3.5만b/d의 원유를 생산하게 되는 2010년 우리나라 자주개발율(현재 4.1%) 1.2%p 상승효과

시사점 2

환율·정유제품 정제마진 축소·유류세 등 유가상승에 대한 3중의 국내유가 완충장치 작동

1.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표시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표시 상승률이 소폭 증가에 그쳐 유가 상승충격을 일부 흡수

2. 최근 세계적인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인해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현상(crack spread 축소) 확대

○ 국내휘발유 가격이 국제휘발유 가격에

연동(02년 하반기 이후)됨에 따라 원유 가격의 상승수준만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

3. 유류세가 종량세로 부과되면서 제품가격 상승효과를 다소 완화

○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 대비 유류세 등 휘발유 관련 세금(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4. 이와 같은 가격 완충효과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04.10~07.10월) 국제 유가가 105.5% 상승하고, 국제 휘발유가격이 61.9%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8% 상승에 그친 것으로 분석



달러기준 유가상승률과 원화기준 유가상승률 비교(연평균)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최근		
	73년	74년	79년	80년	05년	06년	07년*
유가상승률(달러기준, A)	54.40%	290.70%	126.10%	23.40%	46.80%	24.70%	5.40%
유가상승률(원화기준, B)	56.50%	296.80%	126.10%	54.80%	31.30%	16.30%	2.60%
환율상승·하락 효과(B-A)	2.1%p	6.1%p	0%p	31.4%p	△15.5%p	△8.4%p	△2.8%p

* 2007년의 경우 1~10월말까지의 연평균 유가와 2006년 연평균 유가를 대비하여 추정 (06년말 대비 10월말 기준 유가상승률은 43.4%(달러 기준), 39.9%(원화기준), 환율보정 효과 △3.5%p)

휘발유 가격대비 유류세 등 세금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
휘발유가격대비	67.20%	67.70%	66.60%	63.60%	61.00%	59.00%	56.20%

주요 OECD 국가별 세금비중(06년 기준, %)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	미국
휘발유	66.6	64.6	64	60.5	58.9	52.6	43.9	30.3	14.9
순위	1	2	4	11	13	21	24	27	29

* 영국은 산유국으로 원유를 수출함에도 세금비중이 높으며, 비산유국이며 인구밀도가 높아서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높은 유류세 유지

시사점 3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높지 않으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도 불분명

1.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가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가운데

○ OECD 회원국(30개국) 중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중간 수준으로 산유국인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비해 높지 않음

○ 국세 수입 중 유류세 비중도 저하되고 있는 추세

* 유류세 비중(%) : (01)18.5 (02)17.1 (03)17.0 (04)17.7 (05)17.3 (06)16.9

2. 유류세는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20%, 휘발유 교통세 630원/ℓ → 505원/ℓ) 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하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불분명

* 99.5월 : 세금 총 51원/ℓ 인하 → 실제 휘발유가격 최대 9원/ℓ 인하
00.3월 : 세금 총 39원/ℓ 인하 → 실제 휘발유가격 최대 26원/ℓ 인하

○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에 대해 유가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축소되므로 세금인하 효과가 없게 되는 결과

○ 시설·원예농가, 연·근해 어업인 등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를 공급

3.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유류 소비량에 비례하여 혜택이 증가하므로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추이

	97~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10.3	10.6	9.9	9.9	9.9	9.9	10
1분위	15.3	14.8	15.8	15	15.7	15.2	14.9
2분위	12.3	13.4	11.9	11.9	12.6	13.2	11.8
5분위	8.5	8.1	7.4	8	7.8	7.7	8.3

시사점 4

가계 광열·교통비 지출증가가 가계전체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대될 전망

- 가계 광열·교통비 지출증가가 가계전체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 80년대 오일쇼크와 달리 유가와 소득이 함께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
- 다만 계층별로는 광열·교통비 지출비중이 큰 저소득층(하위 20%)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현재 유가수준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비중이 15% 수준(추정)으로 상승(전체가계 평균 10%)
 - 향후 유가상승으로 100불대에 이를 경우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이 16.3%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오일쇼크 시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



되어 큰 부담 발생 예상

* 오일쇼크 당시 광열·교통비 비중을 추정하면 80년 16.3% → 81년 16.9% 수준

3. 또한 유류수요 가격탄력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

○ 중·저소득층 소비비중이 높은 경유(전체석유소비의 18.6%)의 경우 고소득층 소비비중이 높은 휘발유(전체석유소비의 7.8%)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아 경유소비층은 상대적으로 유가인상에 취약

* 유종별 가격탄력도(에경研, 04.12): 휘발유 0.57, 경유 0.36

* (휘발유차) : 소형 43%, 준중형 이상 57%, (경유차) 승용 27%, 승합 화물 73%

○ 대부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전체석유소비의 4.1%)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월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등유 소비비중 : 53.7%)



참고 ||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 등의 부담증가 추정

◇ 소득계층별 가계의 유류비 부담

- 최근 2년간(2005년 대비 2007년 기준) 월소득 120만원(연 1,4천만원)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는 월 평균 12천원, 월소득 250만원 수준의 가계는 월 평균 16천원 증가
- * 유류비 구성내역 : 개인교통비 및 광열비(전기료, 난방비)

(자료 : 통계청, 단위 : 천원)

소득계층 (계층별 가구수는 개략적 추정)	2004 (월평균)	2005 (월평균)	2006 (월평균)	2007 (월평균 추정)	05년 대비 07부담 증감(추정)	
					월평균	2년간 누적
· 기초생활수급자(83만)	118	126	125	137	12	138
· 연소득 3천만원 수준(700만)	227	235	228	251	16	190
· 연소득 4.5천만원 수준(660만)	286	320	324	356	36	436
· 연소득 6천만원 수준(160만)	329	363	398	437	74	887

- * 07년 부담은 국내석유제품(휘발유·등유·LNG) 연간 가격상승률을 가정하여 추정
- 07년 연간 가격상승율은 11.1~11.5일 중 평균가격을 11~12월 중 평균가격으로 가정하여 산출

◇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 경유세를 인상, 유가상승 등에 따라 1톤 이하 화물차 연료비는 최근 2년간 약 40만원 증가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추정)	05년 대비 07년 증감
· 1톤 이하 화물차 연료비	2,114	2,514	2,859	2,917	404

- * '05년 에너지총조사보고(예견연)를 기준으로 추정, 07년 가격은 10월까지 평균 경유가격에 11.1~11.5일 중 평균 가격을 11~12월 평균가격으로 가정하여 산출

◇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 시설농가 : 최근 2년간 연료비 부담이 평균 약 171만원 증가
-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설치, 채소·화훼·과수 등을 재배하거나 양계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 근해어업가구 : 최근 2년간 선박 1척당 유류비 부담이 약 11백만원 증가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추정)	05년 대비 07년 증감
· 시설농업	6,523	7,105	7,462	8,861	1,711
· 근해어업	89,868	115,200	123,636	126,516	11,316

- * 자료 : 농림부, 해양수산부



IV. 대응방향

◇ 최근 고유가는 국제 원유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음

○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절감 등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 마련

1. 서민·저소득층 가계의 고유가 부담 경감

1) 기초생활수급자(83만 가구, 153만명) 가계에 대한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중 수도·광열비 항목의 지원 금액 확대

- 지원금액 : (07년) 월 7만원(연 84만원) → (08년) 월 8.5만원(연 102만원)

*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 (07년)월 121만원 → (08년)월 126만원

- 지원효과 : 총 1,494억원(08년 기초생활보장예산 기반영)

○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연 7만원(동절기 3개월간 분할지원)

* 기초수급자 가계의 최근 2년간 유류비 부담 증가액(13.8만원)의 절반수준 지원

- 지원효과 : 총 580억원(08년 예산안에 반영)

○ 전력요금 할인지원 확대

- 기초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 11시~아침9시) 사용에 대해 요금체계 조정 과정에서 20% 요금 할인제도 도입

· 지원효과 : 6억원(사용가구 : 약 4천 가구)

-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제도(20%)의 수혜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의 신청 대행제도(07.5월 시행)를 적극 활용(사회복지사를 통한 일괄신청방안 강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83만호(06.12월 기준) 중 약 66%인 55만호가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약 28만호가 未신청 상태

2)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감면

○ 저소득층 가계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에 대해 특소세를 하향 조정(현행 134원/ℓ → 변경 90원/ℓ)하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추진현황 : 특소세 하향조정 - 특소세법 개정(안) 국회제출(07.10)
판매부과금 폐지 - 석유사업법시행



유종별 탄력세율 추가 인하 범위

구 분	등 유	LPG프로판 가정용 LPG부탄	취사·난방용 LNG
현행 세액	90원/ℓ *	40원/kg	60원/kg
인 하 액	△27원/ℓ	△12kg	△18kg

* 정부제출 개정안 기준(현행 법정세율 : 181원/ℓ , 탄력세율 : 134원/ℓ)

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지원효과 : 연간 4,076억원(81원/ℓ
가격인하, 표준가구당 연평균 12천원
절감)

* 특소세 하향 조정 : 2,800억원, 판매
부과금 폐지 : 1,276억원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절기(3개월간) 중 등유, LPG 프로판,
LN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탄력세
율을 최대한 인하

- 지원효과 : 3개월 탄력세율 적용시
1,010억원(연간 4,040억원)

3)저소득층을 위한 기타 복지지원제도 확대

○ 가구주 실직 등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
에 대해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
하는 긴급지원대상 확대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체납시 전기요
금(가구당 50만원 한도)과 연료비(07
년 월6만원 → 08년 월6.6만원) 지원
등

- 대상 : (현행) 최저생계비 130%(5만
가구) → (08년) 최저생계비 150%(6
만가구)

- 지원효과(추가분) : 총 33억원(08년
기초생활보장예산 기반영)

○ 에너지카드를 지급하여 가스·전기요



금, 난방, 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
는 방식의 에너지 바우처(Voucher) 제
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국내 사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노인·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방과후
학교 바우처 등

2. 영세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
담 경감

1)영세자영업자 (07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유류비 부담이 큰 이삿짐센터, 용달서
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07년 신고분부
터 조정) 인상

- 지원효과(추정) : 총 610억원(자영업
자 1인당 평균 15만원)

○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
개선부담금 25% 경감



- 지원효과 : 총 315억원(1톤 화물차 기준 연간 4만원 경감)
- *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08.1월 시행 예정)
- ※ 상기 조치에 의해 영세자영업자의 최근 2년간 유류비 부담 증가액(40만원)의 절반수준 경감

2)시설·원예농가

- 면세유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가급적 금년 동절기부터 시행)하면서, 면세유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

- 지원효과(추정) : 총 2,637억원(07년 공급량의 15% 확대 공급시)

- * 불법유통(감사원 감사결과 12월 중 발표예정) 방지를 위해 지난 3년간 면세유 공급수준을 늘리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농가(126만호)들은 면세유 공급이 수요의 7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농림부)

- 지자체의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지원 확대 유도

- 지원 : (07년) 619억원 → (08년) 766



억원

- 지원효과(추가분) : 147억원(지방비 30~60%, 농가 부담 40~70%)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작물별 적정온도 관리 등 에너지 절약형 재배·관리 기술지도 강화

3)연·근해어업 가구

- 수협이 유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유류취급수수료를 한시적(3~6개월)으로 인하

- * 유류취급수수료 : (중앙회)700원/드럼, (회원조합) 1,900원/드럼

- 지원효과 : 총 14억원

-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어업 선박의 관리를 위한 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유류소비 절감

- 연안어선 : 05~08년 중 약 6,300척(전체의 10%) 감척

- 근해어선 : 07~10년 중 약 1,050척(전체의 30%) 감척

- 절감효과(추정) : 2,258억원

- 고유가 차익을 노린 면세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3.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지원 사업 확대

1)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확대 실시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간이난방시설 보급 등 난방 지원사업 확대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구당 90만원 한도)
- 지원 : (07년) 1.6만 가구 → (08년) 1.8만 가구(11년까지 10만호)
- 지원효과(추가분) : 11년까지 총 480억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대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세대 우선 지원)
- 지원 : (07년) 5.3만호(170억원) → (08년) 6만호(190억원)
- 지원효과(추가분) : 20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기능 강화

○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용자를 확대하여 지방도시에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지원 : (07년) 160억원 → (08년) 250억원

- * 시설설치비의 80%(20억원) 이내에서 저리(3년만기 국채금리 등) 용자
- 지원효과(추가분) : 90억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연탄과 등유간 가격차 확대에 의한 동절기 연탄 수요증가 등에 대비하여 연탄 수급안정대책 추진

- 연탄수요가 많은 지역에 정부 비축탄을 확대 공급하고, 철도수송능력 확충 및 비상근무 실시 등 원탄 공급체계 점검
- 연탄공장 및 생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는 배달을 위한 긴급 연탄수송체계 구축
- * 현재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연탄보조금(장당 37원) 제도 운용 중

○ 동절기 중 에너지콜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 에너지민원 해소

4. 에너지 절약 및 석유제품 유통구조 투명화

1)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 민간 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17)을 통해 2017년까지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23.5% 개선(에너지원단위 06년 0.345 → 17년 0.264)



- 원유 비축능력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원유 공급여건 개선
 - * 비축능력 : (2007.3월)116일분 → (2010년)166일분
 -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2004)2.1 → (2005)2.2 → (2006)2.5 → (2011 목표)5.0
- 에너지절약 및 서민층의 자동차 선택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연내 LPG경차 보급 허용 결정(2009년 차량보급)
 - 기대효과 : 휘발유 42.6만배럴(240억원) 절감 추정(2015년 기준)
 - 필요조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
 - 지원(억원) : (07예산) 4,674 → (08당초) 4,837 → (08확대) 6,837
 -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Delta 1.5\%p$)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투자비의 90% → 투자비 전액)
 - 지원효과(이자경감분) : 총 102억원

(중소기업지원효과는 62억원)

2) 석유제품 유통구조 투명화 (07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

-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 개편(정유사 판매 기준가격 → 실제 판매가격, 07.7월)을 통해 석유제품가격의 투명성을 증대
-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시스템 구축(08.4월 시행) 및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정유사간 담합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 강화

5. 에너지절약 국민실천 강화

1) 대국민 홍보강화

- 고유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달효과가 큰 TV 등 매스컴 홍보 강화
 - KBS-2TV「좋은나라 운동본부」1개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률(전년동기(월)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0
전체 공공요금	2.5	2.5	3.2	3.5	3
중앙공공요금	△2.6	0	△0.4	1.4	1.3
지방공공요금	7.6	4.8	6.0	6.9	5.4

코너(20분)를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 관련주제로 방송(11.16부터 매주 1회씩 총 13회)

-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11월에 다양한 에너지절약 행사를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 85년부터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 개최
- 11월중 시민단체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대회(16회), 기술보급 세미나(18회), 가두캠페인(19회) 개최

2) 국민참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

- 경제적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 절약홍보의 한계 보완
 - 석유소비 중 절약잠재력이 큰 수송용 에너지절약에 중점
 -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운전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의 요일제를 타 지자체로 확대(08년 중 1-2개 지자체 시범실시 추진)

6. 공공요금의 안정 유도

-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

공요금 안정노력 강화

-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 수도 · 가스 ·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의 주요요인이 되는 지방공공요금(지자체 관할)의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
- * 시도 부지사회의(행자부), 지자체 물가담당자 회의(재경부) 등을 통해 협조 요청

